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3. 31.(화) 12:00  
(지 면) 2026. 4. 1.(수) 초간

## “모르고 피해보는 일 없게” 공유재산 사용자 권익 보호 강화된다.

- 공유재산 기부자가 재임대 시 전대차 계약서에 기부채납·잔여기간 명시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개정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임대받은 사람(전차인)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에 공유재산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 중인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(재임대)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, 계약 시 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<전차인 보호 위해 정보 제공 의무화>

- 먼저, 공유재산을 기부한 자로부터 재임대 받는 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.
- 그동안 기부자와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여겨져 지방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웠다. 이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지방정부 소유라는 사실이나 남은 사용 기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전차인이 갑자기 퇴거해야 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해 왔다.
- 앞으로 지방정부는 기부자의 전대차 계획을 승인할 때, 전차인이 계약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도록 하여 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한다

## <모든 관사 운영 현황 및 수의계약 매각 결과 공개 확대>

- 아울러,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사운영 및 수의매각 결과의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힌다.
- 현재는 지방정부가 단체장 관사 현황만 공개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모든 관사의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관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.
- 또한,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한 결과도 매년 누리집에 공개하여 공유재산 처분 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.
-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전차인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되고 공유재산 관리·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,
- “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공유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홍성완 (044-205-3681)
		담당자	주무관	이종만 (044-205-3687)

